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 8. 5.
- 나. 제안자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다. 회부일자 : 2019. 8. 5.
- 라. 상정일자 : 2019. 8. 29.(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전 재 운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위치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반환기준, 사전예약과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다. 집행부 의견

- 안 제8조(사전예약) 제2항의 문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약은 48시간 이내’를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 변경하자 요청이 있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1조에 따른 본 조례의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사업’은 악취·공해·소음 등으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액 약 110억원을 들여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사업임

[캠핑장 시설현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캠핑시설 150개소(카라반 15, 오토캠핑 95, 일반캠핑 20, 미니멀 20), 관리동 1개소, 화장실 2개소, 주차장 210면
- 준공예정 : 2019. 9. 30.
- 예산 : 11,057백만원(시비 100%,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 시설운영 : 관리위탁 예정
- 추진사항
 - 2016. 7. : 기본 및 실시시설계용역 준공
 - 2016. 11. : 공사 착공
 - 2019. 6. : 건축공사 착공

- 안 제4조에서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 공단,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캠핑장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²⁾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 제1항³⁾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많은 캠핑장에서 폐기된 캠핑카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예약 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금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사용료는 전국 캠핑장 사용료 대비 평균 수준으로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생략)

- 다만, 캠핑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전국 캠핑장과 비교 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접근성이나 각종 편의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 사전예약과 시설 사용제한이 다른 도시에 비해 까다롭지는 않은지, 캠핑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준공 이후, 누가 관리·운영을 진행할 예정인지, 향후 비용 추계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지,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은데, 타 캠핑장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완화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환경국장) 타 캠핑 운영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캠핑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출입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캠핑장 조성 재원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조례안의 목적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감면 등 혜택은 없는지?
⇒(환경국장)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경로, 유아 등의 혜택은 없으며, 인천시에 주소가 있을 경우 20%의 감면 혜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조문 문구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조문 수정
-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사전예약) 제2항에서 “예약은 48시간 이내”를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에서 “예약은 48시간 이내”를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 	<p>(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p>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p> <p>제4조(관리·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p>	<p>(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p> <p>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미니멀캠핑장)에 한한다.</p> <p>1. 전액감면</p> <p>가.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p> <p>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100분의 30 감면</p>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 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p> <p>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p> <p>② <u>예약은 48시간 이내</u>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전예약) ① (생략)</p> <p>② <u>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u>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p>(생략)</p>

붙임 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미니멀캠핑장)에 한한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

에 한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5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평일	주말	비고
카라반	4인 기준	100,000	135,000	비품 및 전기 사용료 포함
오토캠핑장	4인 기준	25,000	30,000	전기사용료 3,000원 별도
일반캠핑장	4인 기준	20,000	25,000	
노지캠핑장 (미니멀캠핑장)	4인 기준	15,000	15,000	

※ 부가가치세 포함

※ 평일·주말·공휴일 기준

평일	주말	공휴일
일요일~목요일	금요일 · 토요일 · 공휴일 전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날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10,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오토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일반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노지캠핑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 당(초등생 이상) 5,000원, 최대 초과인원 2명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 4시간 이상 초과 : 1일 사용료

□ 자전거 대여료

규격	대여료		비고
	기본(1시간)	시간 초과시	
1인용	3,000원	10분 초과시 500원	
2인용	5,000원	10분 초과시 1,000원	

□ 주차장 사용료

구분	사용료	감면대상
소형	2,000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주차요금 감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포함) 2. 경차 : 50% 주차요금 감면
대형	5,000원	

※ 대형 : 25인승, 2.5ton 이상

□ 기타 사용료

: 샤워장 등 그 밖의 사용료는 관리자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7조 관련)

시 기	내 용		반환기준
주말, 공휴일	사 용 자 의 책 임 있 는 사 유 로 인 한 취 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관 리 자 의 책 임 있 는 사 유 로 인 한 취 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주중	사 용 자 의 책 임 있 는 사 유 로 인 한 취 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 리 자 의 책 임 있 는 사 유 로 인 한 취 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 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캠핑장 시설사용권 (제8조 관련)

<p>No. 0000 - 00000</p> <p>캠핑장 시설 사용권(관리자보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인천광역시장(또는 관리자)</p>	<p>No. 0000 - 00000</p> <p>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인천광역시장 (또는 관리자)</p>
--	---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개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애완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9.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광역시장·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